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
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예정('22.12.11.)에 따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 등 법률 위임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

3. 주요내용

가.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운영(안제7조의2 신설)

- 법제12조의4 위임규정에 따라 정관, 이사회 의결사항,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에 필요사항을 신설

나. 자살예방센터 설치·운영(안제8조)

- 법제13조 개정으로 자살예방센터 설치·운영 주체를 (현행) 복지부 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서 (변경)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

다. 재단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(안제14조)

-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건강정보 등) 처리가능 기관에 재단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 : 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재단의 운영) ①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
(이하 ‘재단’)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4. 임원 및 직원의 임면(任免)
5. 임원의 임기
6.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7. 회계
8. 정관의 변경
9.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1. 경영목표, 재단의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
2. 예산의 사용과 이월 등 집행에 관한 사항
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5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6. 직제, 인사, 보수, 복무, 회계 등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7.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8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요청하는 사항
9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,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 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따라 보건복지부장관,”을 “따라”로, “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”를 “자살예방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”를 각각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장 또는”을 “장, 법 제12조의4에 따른 재단 및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재단의 운영) ①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(이하 ‘재단’)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목적</u> <u>2. 명칭</u> <u>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</u> <u>4. 임원 및 직원의 임면(任免)</u> <u>5. 임원의 임기</u> <u>6.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</u> <u>7. 회계</u> <u>8. 정관의 변경</u> <u>9.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</u> <u>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</u> <u>1. 경영목표, 재단의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</u> <u>2. 예산의 사용과 이월 등 집행에 관한 사항</u> <u>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</u> <u>4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</u>

	5. <u>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</u> 6. <u>직제, 인사, 보수, 복무, 회계 등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</u> <u>에 관한 사항</u> 7. <u>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이</u> <u>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</u> 8. <u>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</u> <u>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요청하는</u> <u>사항</u> 9. <u>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하는 사항</u> ③ <u>재단의 이사회는 이사를</u> <u>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, 감사는</u> <u>이사회에 출석 하여 발언할 수</u> <u>있다.</u> ④ <u>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</u> <u>그 의장이 된다.</u>
제8조(자살예방센터 설치·운영 의 위탁) ① <u>법 제13조제3항에</u> <u>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</u> <u>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</u> <u>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</u> <u>다)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</u> <u>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</u> <u>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</u>	제8조(자살예방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 ① ----- <u>따</u> <u>라</u> ----- ----- ----- -- <u>자살예방센터</u>----- ----- ----- -----

위탁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
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
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
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
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
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
공고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
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
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
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
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
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
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
여야 한다.

제14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
의 처리) ① (생략)

②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
기관의 장 또는 법 제17조제1항
각 호의 기관·단체 및 시설의
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
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·도지사 -----

-----.

④ 시·도지사 -----

-----.

제14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
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 장, 법 제12조의4에 따른
재단 및 -----

-----.

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2.·3.</u>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2.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</u> <u>3.·4.</u>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--	--